##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81

발의연월일: 2021. 5. 18.

발 의 자:서삼석・이개호・임호선

서동용・윤재갑・서영교

홍정민 • 강병원 • 최종유

김승원 · 신동근 · 김정호

김종민 · 김철민 · 김영진

이수진 • 김민철 • 도종환

김영주 · 강선우 · 주철현

이상헌 · 김원이 · 최인호

김영배 · 이용선 의원

(26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폐전· 폐업 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폐전· 폐업 의사에 반하여 허가받은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함.

유사사례인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어업의 폐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 포기 및 양식업의 폐업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하고 있는 반면,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요건·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아 자의적인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개선하고,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3조의 신설 및 제26조제2항 신설).

#### 법률 제 호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변경하거나 폐전·폐업하려는 경우에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허가를 받은 자(제3항에 따라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를 "허가를 받은 자에게"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신고)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폐전·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금제조업 등을 폐전·폐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	<u>변</u> 경하려는 경우
<u>전·폐업하려는 경우에도</u> 또한	<u>에도</u>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 후단에	<u>&lt;삭 제&gt;</u>
따른 폐전·폐업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u>한다.</u>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	<u>&lt;삭 제&gt;</u>
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	
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게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생 략)<신 설>

제26조(허가취소 등) (생 략)

<신 설>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 폐업신고)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폐전·폐업신 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허가취소 등) <u>①</u>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